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대학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(이하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책정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 및 권한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그 밖의 등록금 책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을 위해서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대학은 성실히 협조하야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위원회는 교직원(법인 추천인사 포함)、학생、관련전문가(해당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)를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4명(교원3명, 직원1명)
2. 학생 3명
3. 관련전문가 2명

②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교직원, 학생, 관련전문가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,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.

제4조(위촉) ① 교직원, 관련전문가 위원은 교무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② 학생 위원은 학사운영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위원 임기와 같다.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위원은 1년으로 한다.
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심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제8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(다만 개인정보 보호,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.)

제9조(운영규정)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